

제 1536 호
1991. 1. 10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세 직
편집인: 공 보 관 유 천 수
진 화: 731-6111~3
인 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진 화: 735-3337

시 보

차 례

● 조	례	
제2701호	서울특별시인구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증개정조례	3
제2702호	서울특별시시립병원수가조례증개정조례	3
제2703호	서울특별시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4
● 규	칙	
제2368호	서울특별시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증개정규칙	5
● 고	시	
제 3 호	사료성분등록고시	6
제 5 호	농수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	6

〈이런계속〉

안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2 호	제2종전기공사면허실효	8
제 7 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입법예고	8
● 구 고 시		
제 1 호	도시계획사업(연구시설)시행허가변경(기간연기) (서초)	9
제 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시행허가 (노원)	9
제 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노원)	10
제 3 호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변경시행허가 (노원)	11
● 구 공 고		
제 1 호	주택자재생산업소영업정지해제 (강서)	11
제 1 호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완료공고 (구로)	11
제 1 호	축척변경시행공고 (중구)	12
제 2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강서)	12
제 3 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결정공람공고 (종로)	13
제 4 호	주택건설사업자및대지조성사업영업정지 (동대문)	13
제 27 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지정 (도봉)	13
● 사 령		
● 정 점 공 고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1. 7

서울특별시장 박세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01호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교육위원회) 교육감 및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인구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인구대책과 관련된 유관기관장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 보건사회국장이 되며, 위원은 유관기관 실무급 인사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인구대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1. 11

서울특별시장 박세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02호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입원환자의 급식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의료보호진료 수가의 기준 및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서울특별시립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 중 무료환자외의 자는 서울특별시이 거주하는 자로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2인 (의료보호법에 의한 1종 및 2종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필요없으며, 의료부조대상자의 경우에는 1인)이상이 연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서약서를, 무료환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원서약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립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 중 무료관자의 자는 수가예산액의 30% 이상의 범위안에서 병원장이 정하는 일회 보증금을 예납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보호법에 의한 1종 및 2종 의료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입원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조 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1. 11

서울특별시 시장 박세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703호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 (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센터의 설치등) ①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1. 성동종합체육시설
- 2.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 3. 구민체육센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센터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체육센터의 운영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등) ①시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체육센터의 사용료등은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환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대여받은 국·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체육센터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중 성동종합체육시설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이를 성동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운동장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개인연습사용료중 "성동종합체육시설"란을 삭제하고, 동표 비고란중 "토, 일, 공휴일은 평일의 3할(골프장은 5할)을 가산함. (다만, 골프연습장 및 카드 사용료는 제외한다)"를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으로 한다.

제3조(성동종합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성동종합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고시할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1. 11

서울특별시시장 박세직

◎서울특별시규칙제2368호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가) 입원환자에 대한 수가는 주별로 납부하도록 하되, 매주 월요일에 그 전주분을 징수한다. 다만, 입원 환자가 납기전에 퇴원할 경우에는 퇴원할 때 징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1. 1. 4
서울특별시장

사 료 성 분 등 록 내 역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3호
사료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의 성분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조업체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사료종류	사료명칭	사료용도	사 료 성 분 량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건국사료(주)	서울 성동구 자양동 227-315	전진규	나01-31	담배합	산란초기	유식계용:산란계사-40주	16.0%	2.0%	2.5%	0.4%	8.0%	15.0%
			나01-32	기타가축용배합사료	육성배추리	육성용	19.5	2.0	0.6	0.4	8.0	9.0
			나01-33	"	산란초기 배추리	산란용	18.0	2.0	2.5	0.4	8.0	15.0
위덕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629-6	김재방	나01-34	"	사슴사료1	사육 전기간용	14.6	2.0	0.6	0.4	25.0	12.0

●서울특별시고시제5호

농수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 및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 1. 9
서울특별시장

1. 거래제한지역 및 품목, 기간

지 역	품 목	기 간
서울특별시전지역	○파실류(2종) 바나나, 파인애플	'91. 1. 10 - 12. 31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2호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 실효
전기공사업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전기공

사업 면허를 다음과 같이 실효 처분하였기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
다.

1991. 1. 9

서울특별시 장

- 다 음 -

면허번호	업제명	소재지	대표자	사유
177	대기토건(주)	종로구 윤니동98-78	이응주	자진납담(폐지)

●서울특별시공고제7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함에 있
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1. 1. 10

서울특별시 장

1. 개정배경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을 위해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자유치공원 조성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
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요금체계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서울대공원 높이동산(서울랜드) 입장
요금 변경
어른 : 2,500원→3,000원,

청소년 : 1,600원 → 2,000원

어린이 : 800원 → 1,000원

- 나. 어린이요금 징수대상 연령과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을 시직영관리공원과 민자공원시
설로 구분하고 시직영관리공원은 현행내
로 적용하되 민자공원은 현행대로 적용하
되 민자공원시설은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어린이 : -시직영관리공원-만7세이상
 -민자공원 시설-만4세이상
 - 입장료 : -시직영관리공원-단65세 이
 상 무료
 -민자시설공원-만65세이상
 어린이요금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1. 1. 31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 세워서 작성)
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공원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한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구 고 시

◎서초구고시제1호

도시계획사업(연구시설)시행허가
변경(기간연기)

1. 강남구 고시 제122호('87. 7. 18)로 도시
계획사업(연구시설) 시행허가된 관내 우면
동 17번지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
행허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일
니다.

1991. 1. 7
서 초 구 청 장

- 다 음 -

가. 사업시행지: 서초구 우면동 17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
업 (연구시설)

다. 사업의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용	도	비	고
67,140	10,889.13	49,638.06	기계실, 전기실 연구시설	지상 1-5		
			주차장13,444.65	36,193.41	지하 1층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세종로 100번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이 우 재

마. 사업기간

- 당 초: 1987. 7 ~ 1990. 12. 30
- 변 경: 1987. 7 ~ 1991. 6.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1. 노원구공고 제322호('90. 12. 13)로 도시
계획사업(도로) 변경시행허가 공람공고한
상계동 대로2류 26번(방학로연결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도로) 변경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일
니다.

◎노원구고시제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시행허가

1991. 1. 5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 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착공	준공	비고 (변경사유)
노원구 상계동	도시계획사업 서울 상계 창동택지개발사업주변 도로건설공사 (대로 2류 26번)	B=30m L=490m	인가일	'91. 6	· 가과전제부분 사업 시행에 포함 · 상계국고 진입로 일부포함
<p>●노원구고시제2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p> <p>1. 노원구 공고 제319('90. 12. 10)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공릉2동 234-3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6</p>			<p>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2. 관련도서는 노원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 1 노원구청장</p>		
- 다 음 -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사업시행기간		
노원구 공릉동	공릉2동 234-3 도로개설공사	B=6m L=62m	인가일로부터 '91. 12. 30		
<p>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p> <p>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항</p>		<p>다.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항</p>			
토 지 조 서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토지대장상) 주소, 성명	
공릉2동	234-3	대	322㎡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	
	234-5	대	7㎡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4번지 효성중공업 (주)	

●노원구고시제3호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변경시행허가

1. 노원구 고시 제3호('88. 1. 15)로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시행허가된 노원구 상계동 210일대 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1. 9

노 원 구 청 장

- 아 래 -

가. 사업시행지: 노원구 상계동 210일대
(상계택지개발사업지구내)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다. 사업시행자: 중구 저동2가 85,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 백 낙 조

라. 변경내용: 건축면적(연면적) 증축

- 당 초: 34,277.24㎡

- 변 경: 36,541.88㎡

*지상층면적 2,264.64㎡

사업기간연장

- 당 초: '90. 12. 31

- 변 경: '91. 12. 31

구 공 고

●강서구공고제1호

주택자재 생산업소 영업정지 해제

다음주택자재 생산업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2의 3호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된 주택자재 생산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해제하였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1. 1. 3

강 서 구 청 장

- 다 음 -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등록품목	영업정지기간	해제일자
14-7	대성산업	윤 임 순	화곡동 888-5	시멘트폼목	'90. 12. 1- '90. 12. 30	'91. 1. 3

●구로구공고제1호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7호('77. 2. 18)로 시행허가하고, 구로구 고시 제54호('88. 7. 30)로 변경시행 허가된 다음 도시계획사업(학교)이 준공되었기 도시계획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사업완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1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 고척동 62-16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 마. 변경내용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구로구 고척동 62-10 학교법인 동양학원 이사장 지용업 라. 사업시행규모 : 대지면적 34,974.05㎡	
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건축면적	5,152.17	5,152.17	
건축연면적	27,205.5	27,983.1	증 777.6㎡
바. 시행기간 : '88. 8. 30 ~ '90. 12. 31 ●중구공고제1호 축척변경 시행공고 황학지구 축척변경 사업에 대하여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관계도서를 중구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 중 구 청 장 인		6. 협조사항 : 경계표시 가. 축척변경 시행기간중에는 시행지역내의 지적정리 및 경계복원 측량은 축척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합니다. 다만, 축척변경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유부분의 특정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시행공고일 현재의 소유한계를 지상에 표시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시행목적 :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와 지적 불부합지 해소 2. 사업시행지의 지역 : 황학동 1228번지의 180필지 (15,100㎡) 3. 사업시행기간 : '90. 12. 28부터 '91. 12. 31까지 4. 축척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구청에 비치) 5. 축척변경 시행결과에 따른 면적 증감의 청산에 관한 사항 : 가격평가구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금전청산(관계세 부사항 중구지적과 비치)		●강서구공고제2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처분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1. 1. 4 강 서 구 청 장	

- 다 음 -

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말소사유	등록말소일자
구등록 87-181 신등록 87-14-2	상기주택건설 (개업)	이상기	강서구화곡동 342-54	자진만납	'91. 1. 4

◎종로구공고제3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결정 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91. 1. 11~1991. 1. 25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1991. 1. 11
종로구청장

- 아 래 -

○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신설	지하도로	종로구 종로2가 1-1 인대	1,651	공평 제19지구 도시재개발사업 지하도로

◎동대문구공고제4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영업점지

다음 사업자는 건설법 제50조제2항제2

호에 의하여 영업정지되었기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1. 1.
동대문구청장

영업정지명단 (내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영업정지기간	위반사항	적용법규
90-50-9	배양개발 주식회사	김시훈	동대문구 신설동 117-6	3월 '90. 12. 18- '91. 3. 17	건설공사도급한도내를 초과하여 건설공사도급받음	건설법규 제50조제2항 제2

◎도봉구고시제27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지정

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아파트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1991. 1. 5
도봉구청장

- 다 음 -

1. 지정구역 : 도봉구 방학동 531과 62필지
2. 대지면적 : 32,320.86㎡
3. 아파트명 : 방학동 신동아파트(2단지)
4. 규 모 : 아파트 15층 9동 총 660세대 중 420세대
5. 사업주체 : 신동아건설(주)
대표이사 유상근

사 령

◎1990년 12월 27일자 **인사발령 통지** 령 제 2 호
 서울특별시장에 임함. 박 세 직
 서울특별시장 90. 12. 27
 연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고 건
90. 12. 27

대 통 령

◎1991년 1월 8일자 **공무원 징계처분** 령 제 3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병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비상계획과	지방건축기사보
배석동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동부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원
강성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상수도사업본부 영동포수도사업소	지방수도토목기원
김덕봉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3호에 의거 "감봉1월"에 처함.	중랑하수처리장	기방기제장 (기능직7등급)

◎1991년 1월 10일자 **9급 기술직 공무원 전출** 령 제 4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요철	경기도 전출을 명함.	구로구	지방토목기원보

◎1991년 1월 8일자 **8급이하 공무원 징계** 령 제 5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조수남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영동포수도(사)	지방기업행정 서기보
박종해	불문(경고)	동부수도(사)	지방기업행정서기

◎1990년 12월 31일자 **인사발령 통지** 령 제 6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김 학 계
 지방토목기정
 시설기정에 임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근무를 명함. 90. 12. 31 대 통 령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를 명함. 90. 12. 3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의약과			
지방의무기정		황 해 통	
의무기정에 의함.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의약과장에 보함.			
90. 12. 31			
대 동 령			
◎1991년1월10일자		기능직 공무원 전보	
령 제 7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인 순 열	총 무 과 (시장실)	중 량 구	지방사무보조원 (기능직10등급)
기술직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령 제 8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권 순 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결정(소청90-124, 90.12.27)에 따라 90.9.3자 건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주택개발과	지방건축기사
기능직공무원 파견			
령 제 9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지 희	새질서 새생활실천 상황실파견(91.1.10-별도지시시 까지)	중 로 구	지방사무보조원 (타자·10등)
7급 공무원 전보			
령 제10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배 현 숙	총 무 과	강 남 구	지방행정주사보
◎1990년12월31일자		9급 공무원 의원연직	
령 제450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윤 성 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시민생활과	지방전산처리원보 시보

공무국의 여행 평령 통보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최수과	지방토목기사	이준해	일본	91.1.14 -2.2 (20일간)	초청자부담	한강수계 중소하천 환경정비 계획에 따른 기습연수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소	임석원	교토	91.1.22 -1.31 (10일간)	초청자부담	환경분석 장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정 정 공 고

1. 시보 제1533호(90.12.26)에 게재된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및 행정처분기준등에 관한 지침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420호 '90.12.26)" 내용이 일부 잘못 게재되어 공고합니다.

구분	오	정	비고				
충전사업(용기충전소)허가기준 11호	11. 기준허가 업소 의	11. 기준허가 업소 의	58-6면 12행				
행정처분기준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tr> <td>○수요자시설에 대한 위해 예방 제도</td> <td>고법10조 액법 8조</td> </tr> </table>	○수요자시설에 대한 위해 예방 제도	고법10조 액법 8조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tr> <td>○수요자시설에</td> <td>고법10조 액법 9조</td> </tr> </table>	○수요자시설에	고법10조 액법 9조	58-7면 22행
○수요자시설에 대한 위해 예방 제도	고법10조 액법 8조						
○수요자시설에	고법10조 액법 9조						